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,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31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1. 28. 시행)됨에 따라,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[안 별표 5 제2 호나목6) 신설]

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,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29조제8항”을 각각 “법 제29조제9항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나목6) 및 7)을 각각 7) 및 8)로 하고, 같은 목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목 7)(종전의 6))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29조제8항”을 “법 제29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6)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7일	영업 정지 15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

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사망자	성 명		분묘 설치 연월일	. . .
	분묘 소재지		분묘 설치자 (관리인)	
	설치기간 연장기간		설치기간 연장사유	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 계
	주 소	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인)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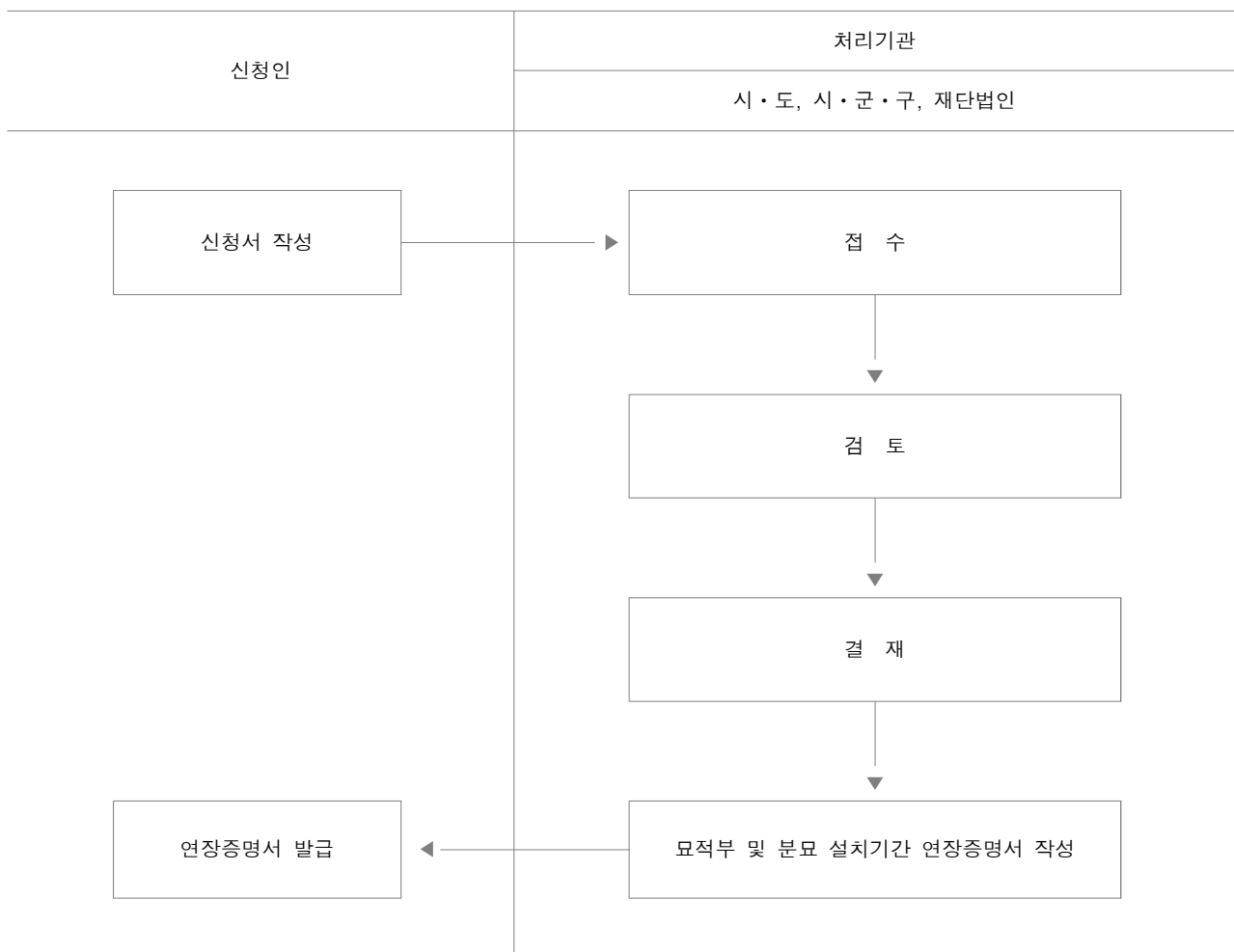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호					
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					
사망자	성 명		분묘 설치 연월일	. . .	
	분묘 소재지		분묘 설치자 (관리인)		
	설치기간 연장기간		설치기간 연장사유		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 계	
	주 소		전화번호		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(또는 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인)				관인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6(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) ① <u>법 제29조제8항</u> 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·소재지,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·단가·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20조의6(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) ① <u>법 제29조제9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② <u>법 제29조제8항</u> 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.	② <u>법 제29조제9항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3